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정·개정

검토보고

운영위원회(구의회사무국)

의안번호	435~443, 452~453
제 출 자	정해영 의원 외 5명
의 안 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북구의회 조례 제정·개정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조치사항으로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 겸직신고 공개제도 도입,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에 따라 성북구의회 조례 2건 제정, 규칙 1건 전부개정, 조례 8건 일부개정, 조례 3건을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2건 제정

-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나. 규칙 1건 전부개정

-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다. 조례·규칙 8건 일부개정

-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성북구의회 관련 11개의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의 실현에 따른 대응으로, 성북구의회의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으로,
- 법 개정에 따른 현행 의회 자치법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외)의 제·개정은 총 10개로, 조례 제정 1개, 규칙 전부개정 1개, 조례 일부개정 7개, 규칙 일부개정 1개이며, 기본 조례 제정으로 3개의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였음.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 의안번호 435호, 정혜영 의원 외 14명 공동발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4개를 통합하여, 성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
-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와 의원의 의정 활동 원칙을 원론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등록) : 사무국장에서 의장으로 변경
- 안 제6조(의석배정)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 방법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의석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안 제13조 : 의장의 직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4조 :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함. 특히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의장 선출 전까지에서 2년으로 명확히 함.
-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 : 연간회의 일수 110일, 정례회 기간 50일, 임시회 기간 15일 이내, 정례회 집회일 6월 5일, 11월 20일을 현행대로 규정하였으나, 법 개정(제44조→제53조)에 따라 정례회 운영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의원님들의 검토와 토론을 통해 변경이 가능함.
- 안 제36조부터 안 제39조 : 개정된 법 제56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에서 일시적이 삭제되어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정된 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개정되어 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 상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 안 제48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 의회 회의규칙과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기본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도록 함.

- 안 제7장 질서와 경호, 제8장 의원연구활동 등은 현행 회의규칙에 있던 조항으로 내용의 변경은 없음.
- 부칙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며,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436호, 안향자 의원 외 14명
-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 1월 공포)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국회통과 21. 9. 28, 시행일 22. 1. 13.)되었으므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청구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과 일치(19세→18세)
 - 청구권자 수를 조례로 규정(법률에 상한만 규정)
 -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
 - 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2조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
- 안 제3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
- 안 4조부터 제7조까지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
- 안 제8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
- 안 제12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 참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소관

- 법에서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전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던 주민조례청구 업무를 지방의회로 이관 필요가 있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주관부서가 의회가 됨.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437호, 양순임 의원 외 14명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현행 조례 일체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안 주요내용

- 안 제2조 : 성북구의회 의원 청인과 직인을 명확히 구분함.
- 안 제2조의2 : 특수공인인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규정 신설
- 안 제5조의2 :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해 신설
- 안 제8조 :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를 사무국장에서 의장으로 변경.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438호, 임현주 의원 외 14명

○ 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 안 제1조 : 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제90조를 제102조로, 제91조를 제103조로 변경
- 안 제4조의2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제439호, 정해숙 의원 외 15명

○ 개정된 **법 제42조제1항1)** ‘직무’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법 제34조를 제42조로 변경
- 안 제2조 : ‘직무’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식 행사 활동 및 주민을 위한 지역활동’으로 변경하여 직무의 범위를 넓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제440호, 진선아 의원 외 15명

○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 지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입법예고 된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차지구는 3~5명에서 3~10명으로 개정. 이후 결산검사위원 정수에 대한 논의 필요

1) **법 제42조제1항** :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폐회 중에 공무여행을 포함한 다)”를 “직무”로 개정하여 지급 기준을 확대하였음.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441호, 양순임 의원 외 15명

○ 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 법 제33조를 제40조로,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36로 변경하였으며,

○ 본 조례는 전부 개정된 법 제40조제2항에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로 바뀌어 이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차별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며,

○ 제40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여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에는 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음.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442호, 진선아 의원 외 15명

○ 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 안 제1조 : 목적에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넣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함.

- 안 제2조 : 윤리강령의 준수 각 호 5가지 사항의 문구를 새롭게 정비함.

- 안 제15조 제5항 : 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할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안 제15조 제6항 : 의원의 겸직신고에 대해 법 제4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

- 안 제16조 : 법 제43조제5항을 인용하여 영리행위의 제한 신설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443호, 임현주 의원 외 14명

○ 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과 대상사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 주요내용

- 안 제1조 : 법 제41조를 제49조로,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55조로 변경

- 안 제4조 : 조 제목 ‘감사·조사의 범위’를 ‘대상기관’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조례로 명확히 함.

- 안 제5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를 명확히 조례에 규정함.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개정안

- 의안번호 제452호, 정해숙 의원 외 15명

○ 법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회의규칙 중 일부 내용이 기본 조례에 반영됨에 따라 회의규칙 내용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회의규칙을 회의 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함.
- 제32조제3항 :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신설, 개정 전 법 제50조에는 의장의 위원회 참석 발언 규정이 있어 회의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었으나, 전부개정된 법에서는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가 삭제되어 의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회의 규칙안 제32조제3항에 새롭게 반영
- 안 제34조(표결의 선포) : 법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이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나, 의장의 표결 선포 방법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 규칙(안) 제34조에 현행대로 반영.
- 안 제37조(표결방법) ‘기록표결’ 방식이 개정된 법 제74조(표결방법)이 신설되어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새로 규정함.
- 안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개정 전 법 제72조제4항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에서 개정된 법 제84조제4항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44조제1항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로 개정하여 공개 방법을 명확히 함.
- 안 제6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법 개정(제98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64조제5항을 삭제

- 안 제6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 개정된 법 제66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규칙에 새롭게 반영
- 안 제70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신설 : 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회의 규칙에 반영함

11) 서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안번호 제453호, 안향자 의원 외 15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 안 제3조(사무분장) 신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안 제4조(전문위원) 제2항제6호에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신설함
- 안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 정책지원관에 직급 및 공무원 종류 규정을 신설함

○ 본 조례 및 규칙 제정·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등 지방의회 관련 조치사항으로 성북구의회 조례 제정 2건, 규칙 전부개정 1건, 조례·규칙 일부개

정 8건 및 3건의 조례를 폐지 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